

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계약서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3.05.02
2. 개정내용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제1조~28조 (생략)</p> <p>제29조(관할법원)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제1조~제28조 (좌동)</p> <p>제29조(관할법원)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<u>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고객의 권익을 위해 관할법원을 은행이 지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함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